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8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 강유정 · 김영배 · 김준혁

위성곤 • 박용갑 • 김한규

박희승 · 서영교 · 문대림

박 정 · 김용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 신망에서 피해자의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영상물을 유통하는 디지털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초기에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수사기관이 범죄 초기에 불법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하여야 하는데이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 불법영상물이 빠르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 신사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5호)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삭제요청 또는"을 "삭제요청,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	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	
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	
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	
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u>삭제요청 또는</u> 대통령령으로	<u>삭제요청, 수사기</u>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	관의 장의 요청 또는
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	
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